

이사회 규정

KP그룹

■ 제·개정 이력

NO	적용일자	제/개정 내용	제정 /전면 개정	부분 개정	검토임원
1	2021.01.01	- 제정	○		관리본부장
2	2022.12.31	- 개정		○	관리본부장
3	2026.03.31	- 개정		○	관리본부장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상기 1항에서 이사회 의부의사항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④ 독립이사는 업무상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 2 장 구성

제4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독립이사 및 기타 비상무 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장)

- 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인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의장이 정한 이사의 순으로 하며, 동급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선임된 날짜가 빠른 순으로 한다. 다만, 선임된 날짜가 같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장 회의

제6조(종류와 참석)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연간 과반이상 참석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이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의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FAX, 등기우편,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의사항)

-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1-3.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 의 개최 여부 및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2.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 감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 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 등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신주의 발행
6.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7. 준비금의 자본전입
8. 전환사채의 발행
9.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0. 1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 시설투자, 시설 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
11.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상의 타법인에 대한 대여(금전 또는 유가증권)
12.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13.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의 대규모 신규차입
14.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에 상당하는 타인을 위한 신규 보증 또는 담보 제공
15. 자기주식 취득, 처분 및 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16. 자기주식의 소각
17.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작성 및 승인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3. 타회사의 임원 겸임
4. 이사 종류(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의 결정

5)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4.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
5. 기타 법령, 공시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감사 및 관계인의 출석)

-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위임)

- ①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서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업무를 담당이사에게 해당사항의 집행을 대행 시킬 수 있다.

제14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총무부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

제17조(문서의 보존)

이사회 부의안건과 의사록은 본사에 보존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